

PART

07

지방자치론

Chapter 01 지방자치론의 기초

Chapter 02 정부 간 관계

Chapter 03 주민참여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론의 기초

- 01 전래권설(국권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 02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주로 헤겔(Hegel)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 03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 0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05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0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 07 기관대립형은 기관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 08 기관분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감시기능을 할 수 있다.
- 09 단층제는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한다.

- 10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
- 11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단을 두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이다. ○×
- 12 우리나라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으며,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

★

- 01 전래권설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다는 관점임
- 02 전래권설에 대한 내용임 → 전래권설은 19C 독일의 공법학자들의 주장으로 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권리로 간주함
- 03 고유권설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 간주함 →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이 부여했다는 전제에 기초함
- 04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05 * 아래의 조항 참고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06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되, 주민투표에 따라 기관통합형으로 바꿀 수 있음
- 07 기관대립형은 기관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결기관과 행정기관의 분업화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이 촉진될 수 있음
- 08 기관분립형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분업 관계는 권력남용 방지 및 상호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함
- 09 단층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바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음
- 10 중층제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간관리자 역할을 전담하므로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 11 * 아래의 조항 참고
제주특별법 제88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 12 * 행정시장은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는 바 도지사가 임명함
제주특별법 제10조 【행정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Answer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 13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읍·면·동의 명칭과 폐치·분합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1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 15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 16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한이다.
- 17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 18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 19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20 지방의회 의장 혹은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21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 2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3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폐치·분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14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임
- 15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전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가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음
- 16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
- 17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8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음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19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권에 해당함
- 20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함
- 21 주민자치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의 원리임
- 22 국무총리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쳐야 함

Answer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정부 간 관계

- 01 라이트(Wright) 모형에서 분리형은 중앙·지방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 02 기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을 의미한다.
- 03 보충성의 원칙은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 04 포괄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해야 한다’와 관련된 사무배분 원칙이다.
- 05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은 바로 그 시정을 직접 명할 수 있다.
- 06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은 바로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 07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 08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범위가 넓어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09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광역적인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0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 중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01 라이트(Wright)는 정부모형을 포괄형, 중첩형, 분리형으로 구분함 → 이 중에서 분리형(seperated model)은 중앙·지방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함

02 ※ 아래의 조항 참고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배분의 원칙】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03 2번 해설 참고

04 ① 선지는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임

② 포괄성의 원칙: 단편적인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05 ※ 아래의 조항 참고

지방자치법 제188조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06 ※ 아래의 조항 참고

지방자치법 제18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07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

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넓기 때문에 현지성 확보가 어려움

09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이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광역적인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10 ※ 아래의 조항 참고

지방자치법 168조 【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Answer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11**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 간의 자치단체조합의 설치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2**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처리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
- 13**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처리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
- 1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한다. ○×
- 15**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무처리의 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

★

- 11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 간의 자치단체조합의 설치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2 행정구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임
- 13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협의체, 행정협의회, 사무위탁과 함께 공동처리 방식에 해당함
- 14 ※ 아래의 조항 참고
지방자치법 제187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15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무처리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Answer 11 × 12 × 13 ○ 14 ○ 15 ×

- 01 주민참여는 행정의 전문화를 향상시킨다.
- 02 주민발안제에 있어 사용료의 부과, 행정기구 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의 사항은 주민에 의한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 03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04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 05 비례대표선거구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01 주민은 일반적으로 정부관료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음
- 02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03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없음
- 04 주민소환법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05 비례대표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됨

Answer 01 × 02 ○ 03 × 04 ○ 05 ×

- 06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07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실시할 수 없다.
- 08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 09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권자 중 1/4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 10 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베트남국적 C씨(45세)는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현재 3년이 지났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 12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13 ○○시 주민 E씨(57세)는 시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의 위법에 대해 감사청구한 자로서,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 14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이다.

15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 직접 참여제도이다.

06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요함

07 주민소환법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08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함

09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됨

10 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임

11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12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3 주민소송: 자치단체의 재무행위와 관련하여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해당 단체장을 상대방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14 ※ 참고: 주민발안은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의미함

15 주민발안(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 직접 참여제도임

Answer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01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 02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주민에게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다.
- 03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 04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 05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 06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 07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 08 많은 경우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 09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s)’의 성격을 띤다.
- 10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 11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 12 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 13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 14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 ○×
- 15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 01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에 해당함
- 02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없음
- 03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함
- 04 세외수입은 세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에 해당함
- 05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조건과 용도가 붙지 않는 일반재원임
- 06 일반재원은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재원임
- 07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임
- 08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음
- 09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임 →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s)’이라는 것은 용도에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내용임
- 10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임
- 11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12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으로써 대개 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임
- 13 조정교부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의존재원임
- 14 ① 지방재정조정제도, 즉 의존재원은 자주재원이 아니므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
② 재정자립도: 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 15 ①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짐
② 재정자립도: 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Answer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